

## 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9

제출년월일 1999. 4.

제출자 영주시장

## 1. 개정이유

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생 자격과 선발에 있어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현행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목적중 “이·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이·통장 사기양양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통장자녀”로 함(안 제1조)
- 나. 장학생의 자격중 “이·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를 “신청일 현재 이·통장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자의 자녀”로 하고, 학업성적·소질·재능 등의 자격 조항을 삭제 함(안 제2조)
- 다. 선발기준중 중·고등학생 배정비율 규정을 삭제하고, 장학생을 이·통장세대당 2인 이내로 하되 지급회수를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 각 1회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납금 납기별로 매 공납금 납기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지급정지 사유중 “보호자인 이·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를 “이·통장이 현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로 하고,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및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를 삭제 함(안 제8조)

바. 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조자료 : 덧붙임

○ 입법예고 결과

## 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신청일 현재 이·통장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인자의 자녀로 한다

제3조중 “적당”을 “적합”으로 하고, “매학년마다 선정하여”를 “매학년도 마다”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매학기 개시후”를 “매학년도 개시”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장학생은 이·통장 세대당 2인 이내로 하되 각 학생별로 중·고등 학교 재학기간중 각 1회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으며,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장학금은 공납금 납기별로 매 공납금 납기내에 지급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1. 이·통장이 현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립·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통장자녀에게 ..... ..... .....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통장으로 2년이상 노숙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직학년 점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신청일 현재의 이·통장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의 자녀로 한다 1. 《삭제》 2. 《삭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3조(추천) ..... ..... 적합 ..... 매학년도 마다 ... .....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① ..... ..... ..... ..... 매학년도 개시 .. .....

(제38회 - 총무 제1차 부록)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 할에 있어서는 그 배정비율은 중학생5할, 고등학생 5할로 하고 중학교는 학교간에 평준화 되도록 하며,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배정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니.</p> <p>③ 장학생은 1세대1인으로 하며 국기, 지방 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p>	<p>② 《삭제》</p> <p>③ 장학생은 이·통장 세대당 2인 이내로 하되 각 학생별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각 1회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으며, 다른 장학금.....선발에서.....</p>
<p>제7조(장학금의 지급) 1.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p> <p>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p>	<p>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공님금 납기 별로 매 공님금 납기내에 ..... 《단서 삭제》</p> <p>② ..... ..... .....</p>
<p>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호자인 이·통장의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li> <li>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li> <li>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li> <li>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li> <li>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li> </ol>	<p>제8조(지급의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통장이 현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임 된 때</li> <li>2. 《삭제》</li> <li>3. ..... .....</li> <li>4. 《삭제》</li> <li>5. 《삭제》</li> </ol>

(제38회 - 총무 제1차 부록)

현 행	개 정 안
<p>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 ..... .....</p>
<p>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학구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둘째가의 현금 으로 한다.</p>	<p>제9조 〈삭제〉</p>
<p>제10조(시행규칙) 〈생략〉</p>	<p>제9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 입 법 예 고 결 과

[ ] 조례명 : 영주시의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 ] 예고방법 : 영주시보 제185호에 개재

[ ] 예고일 : 1999년 7월 12일

[ ] 예고기간 : 1999년 7월 12일 ~ 1999년 7월 31일(20일간)

[ ] 의견제출 : 제출된 의견 없음